

예 산 총 칙

2016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16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합 계 | 409,848,081 | 12,295,442 |
| 일반회계 | 370,199,716 | 11,105,991 |
| 특별회계 | 39,648,365 | 1,189,451 |
| 공기업특별회계 | 26,008,732 | 780,262 |
|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| 11,649,140 | 349,474 |
|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| 14,359,592 | 430,788 |
| 기타특별회계 | 13,639,633 | 409,189 |
| 주택사업특별회계 | 56,915 | 1,707 |
| 농어촌뉴타운특별회계 | 929,500 | 27,885 |
|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| 247,330 | 7,420 |
|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| 1,608,212 | 48,246 |
| 농수산진흥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 | 1,520,640 | 45,619 |
|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| 1,161,610 | 34,848 |
|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| 2,229,340 | 66,880 |
| 주차장사업특별회계 | 667,000 | 20,010 |
| 수질개선특별회계 | 4,359,459 | 130,784 |
| 도시개발특별회계 | 308,813 | 9,264 |
| 기반시설특별회계 | 14 | 0 |
|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| 550,800 | 16,524 |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·세출예산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.

제 4 조 계속사업은 해당없음.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음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,278,907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02억원으로 한다.

제 8 조 다음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 부터 이용할 수 있다.

1.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
2. 재무활동경비
3.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
4.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